

1. 印尼정부, 수입관세 최대 5배 인상

○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수입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고 지난 7월 23일 발표함.
- 식료품을 중심으로 미용제품, 옷, 가방, 냉장고,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 등 국내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주요 제품의 수입관세가 인상됨.
- 인도네시아의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4.7%로 최근 6년 동안 가장 낮은 기록으로, 정부는 이 같은 저조한 경제성장률의 원인을 가계소비 위축 때문이라 판단, 따라서 수입품 관세를 인상해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임.
- 그러나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이에 재무부 재정정책국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한적일 것” 이라는 반응임.
- 아울러 “이미 상당수 국산 제품이 가격이 상승한 수입품의 대체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곧 최근 경기침체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국내 기업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작은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긍정적인 영향을 피력함.
-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커피의 수입관세는 기존 5%에서 20%로 15%p 증가함. 가공육은 5%에서 30%로, 의류와 장신구는 10%에서 12.5%~15%로 인상됨. 자동차 역시 기존 10%와 40%에서 20%와 50%로 각각 10%p씩 증가함.
- 가장 큰 변화는 수입주류 제품군으로, 수입주류에 대한 관세는 기존(30%)의 5배인 150%로 인상됨. 즉, 알코올도수 80% 미만의 수입주류는 모두 150%를 적용함.
- 이번 수입관세 인상정책은 ‘수입품에 관한 세금부과 및 분류법 관련 재무부장관령 2011년 제11호’의 개정령인 ‘2015년 제10호’에 근거하며, 7월 23일부터 시행함.

○ 시사점

- 관세 인상으로 국내 생산품들이 수입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

지임.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지난 23일에 시행한 수입관세 인상에 따라 하반기(7~12월)의 세수가 8,000억 루피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이번 수입관세 인상이 적용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상류층을 겨냥한 것으로, 상류층을 겨냥한 관세 정책은 위축된 가계소비를 신장시키는 데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다수임.
- 또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관세정책은 오히려 외국인 사업자들의 반감만 살 수 있으며,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새로운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파급효과는 어떻게 다를 것인지 의문임.

* 출처: 2015년 7월 27일 자카르타경제일보

** 첨부 참고('수입품에 관한 세금부과 및 분류법 관련 재무부 장관령 2015년 제 10호' 의 식품관련 일부사항 번역문)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주의사항

1. 2015년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세관 통관규정 발표

○ 주요내용

-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이 공항세관에서 일반수입, 탁송품, 우편,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2015년 조항을 발표함.
- 수입자인증번호(API)를 소지한 수입업자가 통관번호(NIK)를 소지하고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가 일반 수입으로, 수입업자는 수입관세 및 소비자 면세를 받기 위해 재무부장관령에 의한 면세승인을 받아야 함.
- API를 취득했으나 NIK를 소지하지 못한 수입업체는 1회에 한해 세관장에게 NIK 미소지 수입통관을 신청할 수 있음.
- 택배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탁송품의 경우, 금지물품을 수입하지 않는 수입업자에게 수입자격이 주어지며, API 또는 NIK 소지의무가 없다. 운송물 중량기준은 운송물당 또는 하우스 B/L 당 최대 100kg 이내로 수입이 가능함.
- 수입관세는 운송물당 또는 마스터 B/L당 FOB 미화 50달러 초과 시 세관공무원이 정한 금액의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2조의 선납법인세 등이 부과됨.

- 탁송품의 운송물 당 소비세 면세한도는 최대 담배 40개비, 시가담배 10개, 기타 담배 40그램이나, 에틸알콜 포함 주류가 최고 350ml 초과 시 직접 폐기조치됨.
- 탁송품이 3종류 이상인 경우, 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기준으로 함. 예를 들어, 4가지 종류의 물품 수입관세율이 5%, 10%, 15%, 25%인 경우, 수입관세율은 25%를 기준으로 계산.
- EMS 또는 일반 소포로 인도네시아 우체국(Pos Indonesia)을 통한 수입인 우편 서비스는 소포당 최대 FOB 미화 50달러 이내에 한해 수입관세가 면세됨.
- 우편서비스의 소비세 면세한도는 탁송품과 동일하며, 목적지가 자보데따벡(자카르타, 보고르, 데벵, 땅으랑, 브카시) 지역인 EMS 소포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가 수카르노하타 공항세관에서 이뤄지지만, 목적지가 자보데따벡인 일반 소포에 대해서는 세금납부를 KPBC Pasar Baru에서 하게 됨. 우편물 확인은 뽀스인도네시아 홈페이지(<http://ems.posindonesia.co.id>)에서 가능.
- 우편물이 세관에 유치된 경우는 보통 우편물 허가문제, 수입관세 및 수입세 미납문제가 예상되며 뽀스 인도네시아 문의전화(021-550-1500)를 통해 문의.
- 직접 휴대(핸디캐리) 또는 별송품으로 간접 운송하는 경우의 수입관세면제는 인당 최고 FOB 미화 250달러 또는 가족 당 최고 FOB 미화 1천불까지임.
- 그러나 수입관세 면제는 상업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핸디캐리, 간접운송의 경우 성인 1인당 최대 담배 200개비, 시가담배 25개, 기타 담배 100그램까지 소비세가 면세됨.

*출처: 2015년 4월 13일, 자카르타경제신문

2. HS코드, 관세

* 첨부 참고 (‘수입품에 관한 세금부과 및 분류법 관련 재무부 장관령 2015년 제10호’의 식품관련 일부사항 번역문)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청 요구사항

○ 업데이트 사항 없음.

III

통관 컨설팅 Q&A

1. 통관 절차 및 소요기간 관련 문의

Q: 인도네시아로 제품을 수출하고 싶습니다. 통관하는데 보통 기간이 얼마나 소

요되나요?

A: 통관통보를 받은 후, 수입통관서류가 어느 절차*를 걸쳐야 하는 지 결정되는 데에 적어도 4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제품이 물품통관승인서(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를 발급받기 전에, 검역과 서류확인 절차를 밟습니다.('Jalur Merah'로 통칭.) 통관통보를 받은 후, 해당 제품은 12시간동안 검역을 받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보통 물품통관승인서는 통관통보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참고사항: 총 5개의 절차 종류가 있음.

1. JALUR MERAH: 물품통관승인서(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이하 'SPPB')가 발급되기 전에 검역과 서류확인을 받는 수입제품통관절차.
2. JALUR HIJAU: 검역을 받지 않고 물품통관승인서(SPPB)를 발급받은 후, 서류확인을 받는 수입제품통관절차.
3. JALUR KUNING: 검역을 받지 않고 물품통관승인서(SPPB)를 발급받기 전, 서류확인을 받는 수입제품통관절차.
4. JALUR MITA Non-Prioritas: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게 검역, 서류확인 없이 진행되는 수입제품통관절차. 단, 수입반송된 수출제품, 무작위 검사로 선별된 제품, 한시적 수입제품 제외.
5. JALUR MITA Prioritas: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게 검역, 서류확인 없이 진행되는 수입제품통관절차.

* 출처: 인도네시아 관세청 공식홈페이지(www.beacukai.co.id)

IV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 통관거부 사례를 업데이트하는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부재하여 현장 사례로 대체함.

1. 2015년 상반기, 시중 불법식품 적발건수 감소

- 최근 4년간(2011~2014년) 불법식품 적발 건수가 많았으나, 2015년에는 그 건수가 감소함.
- 2015년 7월 10일 기준(르바란 명절 이전),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현행 규격기준에 부적합하고 식품기준에 미달한 총 4,709개 품목(250,908개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적발함. 이는 총 283억 루피아(약 25억 원) 상당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

	적발 사유	적발 품목 수	%	적발 금액
1	무허가 식품	1,031개	75.5%	214억 루피아
2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2,303개	19.1%	54억 루피아
3	부패 또는 변질된 식품	1,375개	5.4%	15억 루피아
총 합계		4,709 개	100%	283억 루피아

- 2015년 식품안전검사 결과, 총 7,806 검사품목 중 7,126개 품목(91.29%)은 통과되었으나, 680개 품목(8.71%)은 기준미달 판정을 받음. 기준미달 판정 사유는, 로다민B 색소 검출(285개 품목), 포르말린 검출(211개 품목), 붕사 검출(162개 품목), 노란색 메탄올 검출(5개 품목)이 되어서임.

*출처: 인도네시아 식약청 공식홈페이지(www.pom.go.id)

****첨부(‘수입품에 관한 세금부과 및 분류법 관련 재무부 장관령 2015년 제10호’ 의 식품관련 일부사항 번역문)**

번호	HS코드	항목	관세 인상률 (기존 관세율)
1	0901	커피, 로스티드, 디카페인 여부 불문, 커피를 포함한 제품 -로스티드 커피 : --디카페인 아닌 : ----원두를 갈지않은 ----원두를 갈은 --디카페인 : ----원두를 갈지않은 ----원두를 갈은	20%(5%) 20%(5%) 20%(5%) 20%(5%)
2	0902	차, 가향 여부 불문 -녹차(발효하지 않은)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에 한함) -기타 녹차(발효하지 않은) :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에 한함) : --잎 --기타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	20%(5%) 20%(5%)

		--요 --기타	20%(5%) 20%(5%)
3	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30%(5%) 30%(5%)
4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균질화한 조제품 --돼지고기 포함,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동물 간의 것 -가금류의 것(제0105호의 것에 한함): --칠면조의 것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뼈 제거 및 분리한 것 ----기타 --닭의 것 : ---치킨커리,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기타 -돼지의 것: --넙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어깨살과 그 절단육: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기타(혼합물을 포함): ---런천미트: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기타: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소의 것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 --양고기커리,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5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품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	

		--연어: --청어: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정어리·사르디넬라·브리스링 또는 스프랫: ----정어리: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기타: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 종) ----밀폐용기에 넣은 것 -----다랑어 -----기타 ----기타 --고등어: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멸치: --뱀장어: --기타: ----전갱이,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삭스핀 --생선소시지: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기타 ----잘게 썬 냉동생선, 끓이거나 찐 것 -----생선, 새우볼 -----기타	15%(10%) 15%(5%) 15%(10%) 15%(5%) 15%(5%) 15%(5%) 20%(10%) 20%(10%) 20%(5%) 15%(10%)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6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게: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새우와 보리새우: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기타:	15%(5%) 15%(5%)

		----새우 페이스트 ----기타: -----생선 페이스트 -----빵가루 묻힌 새우 -----기타	15%(5%) 15%(5%)
7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 -추잉껌(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 -기타: --약용캔디, 드롭프스 --백색초콜릿 --기타: ----젤라틴을 포함한 (부드러운) ----기타	20%(10%) 15%(10%) 20%(10%) 20%(10%) 20%(10%)
8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함) -기타 조제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상·페이스트상·분말상·입상 또는 기타 벌크상의 것에 한함): --초콜릿 과자(블록상·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 --기타 -기타(블록형·슬래브형 또는 바형):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초콜릿과자 ----기타 --속을 채우지 않은 것: ----초콜릿과자 ----기타 -기타: --초콜릿과자(태블릿형 또는 캔디형) --밀가루,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40%이상 50%미만인 것)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 (코코아 함유량이 중량기준 5%이상 10%미만인 것, 유아용의 조제식료품, 소매용의 것에 한함) --기타	15%(10%) 15%(10%) 15%(10%) 20%(10%) 20%(10%) 20%(10%) 20%(10%) 20%(10%) 10%(5%) 15%(5%)
9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 뇨끼·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속을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조란 넣은 것 --기타: ---쌀 버미첼리 ---투명 버미첼리 ---면 ---기타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고기 또는 고기내장으로 속을 채운 것 --생선, 갑각류 또는 연체동물로 속을 채운 것 --기타 -기타 파스타: --인스턴트 쌀 버미첼리 --투명 버미첼리 --기타 인스턴트 면 --기타 -쿠우스쿠우스	20%(5%) 20%(5%) 20%(5%) 20%(5%) 20%(5%) 20%(5%) 20%(5%) 20%(5%) 20%(10%) 20%(10%) 20%(10%) 20%(10%) 20%(5%)
10	1904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 콘플레이크)과 난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 제외)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코코아를 넣은 것 --기타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 --기타 -불거소맥 -기타: --즉석밥을 포함한 쌀 조제식료품 --기타	 10%(5%) 10%(5%) 10%(5%) 10%(5%) 10%(5%) 10%(5%) 10%(5%)
11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귀리빵 -진저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스위트 비스킷 및 와플과 웨이퍼: --스위트 비스킷: ---코코아를 넣지 않은 것 ---코코아를 넣은 것 --와플과 웨이퍼	 20%(5%) 20%(5%) 20%(10%) 20%(10%) 20%(10%)

		-러스크·토우스트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설탕,꿀,계란,지방,치즈 또는 과일 첨가하지 않은 것 ---빵가루 ---기타 --기타 -기타: --설탕첨가하지 않은 유아용 젓니 비스킷 --기타 설탕첨가하지 않은 비스킷 --케이크 --파이 --밀가루 사용하지않은 베이커리제품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성찬용웨이퍼, 실링웨이퍼, 라이페이퍼와 그 밖에 유사한 물품 --짹짹하고 바삭한 스낵 --기타	20%(10%) 20%(10%) 20%(5%) 20%(5%) 20%(5%) 20%(5%) 20%(5%) 20%(5%) 20%(5%) 20%(5%) 20%(5%) 20%(10%)
12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5%)
13	2101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커피와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인스턴트 커피 ---기타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 잘게 갈은 볶은 커피를 기제로 한, 식물성 지방을 포함한 반죽형태의 혼합물 ---기타 -차나 마태 추출물, 에센스, 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혼합차, 우유파우더, 설탕을 넣은 차 조제품 --기타 -볶은 치커리,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에센스, 농축물	20%(5%) 20%(5%) 20%(5%) 20%(5%) 20%(5%) 20%(5%) 20%(5%) 20%(5%) 20%(5%)
14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간장 -토마토케찹과 기타 토마토소스 -겨자의 분·조분과 조제한 겨자 -기타: --칠리소스	15%(5%) 15%(5%) 15%(5%)
15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5%(5%)
16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기타: --건조유부 또는 유부스틱 --착향 또는 착색 시럽 --비유제크리머 --자기소화효모엑스 --음료제 조용 무알콜 조제품 --음료제 조용 알콜 조제품 --식품보충제 --건강보충제 --기타: ----음식가공을 위한 영양성분을 포함한 화학혼합물 ----홍삼제품류 ----유당불내성 유아를 위한 조제품 ----유아용 조제품 ----카야 ----기타 의료식품 ----기타 조미료 조제품 ----기타: -----템페	15%(5%)
17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 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일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 --향미를 첨가한 광수 또는 탄산수 --기타 -기타: --향미를 첨가한 UHT 우유 --두유 --기타 탄산을 첨가하지 않은 음료 --기타	10%(5%) 10%(5%) 10%(5%) 10%(5%) 20%(5%) 20%(5%)
18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2009호의 것을 제외) -발포성 포도주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알코올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함) --2리터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포도주: ----도수가 15% 미만인 것 ----도수가 15%이상 23% 미만인 것 ----도수가 23 이상인 것 ---포도즙(알코올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함): ----도수가 15% 미만인 것 ----도수가 15% 이상인 것	90% 90% 90% 90% 90% 90%

		--기타: ---포도주: -----도수가 15% 미만인 것 -----도수가 15% 이상 23% 미만인 것 -----도수가 23% 이상인 것 ----포도즙(알코올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함): -----도수가 15% 미만인 것 -----도수가 15% 이상인 것 -기타 포도즙: --도수가 15% 미만인 것 --도수가 15% 이상인 것	90% 90% 90% 90% 90% 90% 90% 90% (Rp.55,000/ Liter)모든항목
19	2205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함)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도수가 15% 미만인 것 --도수가 15% 이상인 것 -기타 --도수가 15% 미만인 것 --도수가 15% 이상인 것	90% 90% 90% 90% (Rp.55,000/ Liter)모든항목
20	2206	기타의 발효주(예:사과술·배술·미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 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사과주 또는 배주 -사케 -토디 -샌디 -기타, 벌꿀술을 포함한: --기타 청주 --기타	90% 90% 90% 90% 90% 90% (Rp.55,000/ Liter)모든항목
21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 인 것에 한함),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수 --브랜디 --기타 -위스키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기타 증류주 -진 및 제네바 -보드카	150% 150% 150% 150% 150% 150%

		-리큐르류 및 코디얼	150%
		-기타:	
		--의약용 삼수, 도수가 40% 이하인 것	150%
		--의약용 삼수, 도수가 40% 이상인 것	150%
		--기타 삼수, 도수가 40% 이하인 것	150%
		--기타 삼수, 도수가 40% 이상인 것	150%
		--아라크주 또는 파인애플 증류수, 도수가 40% 이상인 것	150%
		--비터스와 유사한 주류, 도수가 57% 미만인 것	150%
		--비터스와 유사한 주류, 도수가 57% 이상인 것	150%
		--기타	150%
			(Rp.125,000 /Liter)모든항목